

대전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122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12204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9. 22 선고 2019가단10541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신수

변론 종결 2021. 8. 10.

판결 선고 2021. 9. 1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9. 22. 선고 2019가단1054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1.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603,4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03,4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14행의 "643,831,282원"을 "425,148,571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16행의 "2017. 3. 24."을 "2017. 2. 2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17행의 "구상금 724,136,3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을 "구상금 724,136,305원과 그 중 721,988,05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13행의 "153,000,000원이고"를 "135,000,000원이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의 나.항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5면)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은 망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5,700만 원을 2006. 12. 26. 망 E으로부터 증여받아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다. 한편 망 E은 소득이 없이 지내다가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 E의 처로서 10년 이상 망 E을 병간호하며 부양해 왔다. 이러한 B의 특별수익과 피고의 기여분 및 피고가 B에게 2013. 7. 1.과 2013. 12. 26. 합계 3,400만 원을 증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이나 B의 특별수익이 등이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B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17행과 1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태영

판사김윤중

판사윤현정

별지